

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(제10조의13제1항 관련)

1.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

$$\text{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(kL)} \times \text{건설단가(원/kL)} \times \text{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} \\ / 365 \times \text{연간 대출금리}$$

- 가.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은 등록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용량을 공제한 물량으로 한다.
- 나. 건설단가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한국가스공사 저장시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.
- 다.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부터 과징금부과일까지로 한다.
- 라. 연간대출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.